

# 일본 전국농업회의소의 조직 및 활동현황

편집실

## 1. 조직현황

### 가. 일본 농업회의소 역사

- 전국농업회의소는, 「농업 및 농업인의 입장 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농업생산력의 발전 및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농민의 지 위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1961년)을 근거 법으로 1965년 11월 11일에 설립.

#### □ 농업위원회 계통조직

- 시정촌 농업위원회, 도도부현 농업회의, 전국농업회의소의 3단계
  - 조직은 각 단계별로 다르지만,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직이고,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농업인의 대표인 농업위원회를 기초로 하는 계통조직으로 구성됨.
  -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업인이나 지역의 의견을 결집하고, 농지, 구조, 경영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경영확립, 그리고 사회, 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나. 시정촌(市町村) 농업위원회

- 시정촌 농업위원회는,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시정촌에 설치가 의무

화되어 있는 행정위원회임. 농업인의 대표인 농업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농업위원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농업인의 선거로 선출된 선거위원과 시정촌장이 선임한 선임위원으로 구성.

#### □ 농업위원회의 업무

- 법령업무(농업위원회 법 제6조 제1항)
  - 농업위원회에 의한 협의체의 행정기관(행정위원회)으로서 농업위원회만이 전속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업무.
  - 이 업무에는 농지의 권리이동에 대한 인허가나 농지전용의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농지행정의 집행, 농지에 관한 자금이나 세제, 농업인연금 등에 관한 업무를 포함.
  - 이들 업무는 각 지역의 농지이용방법을 포함하여 우량농지의 확보와 그 유효이용을 권유하는 것으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 임의업무(제6조 제2항)

- 농업위원회의 전속적인 업무(법령업무)이고, 농업위원회가 농업인의 공적대표기관으로서 농지의 이용조정을 중심으로 지역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 2005년 농업위원회법의 개정으로 농지

와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관한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음. 특히 육성해야 할 농업 경영의 목표를 정한 시정촌의 기본구상(농업경기반강화촉진법에 근거한 시정촌의 육성방침)의 실현을 위한 인정농업인의 육성과, 농지유동화, 농업경영의 법인화 등을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그리고 농업 및 농업인에 관한 조사연구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도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기반이 되고 있음.

### ○ 의견의 공표, 건의 및 자문에 대한 업무(제6조 제3항)

- 농업위원회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아니고, 농업인의 공적대표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으로, 지역 내의 농업 및 농업인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공표하거나, 행정청에 건의하고, 또는 행정청의 자문에 대응하는 업무.
- 농업인이나 지역농업의 입장에 서서 추진해야 할 방향과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농업인의 대표로서 선출된 농업위원으로 구성되는 농업위원회의 중대한 역할임.

### 다. 도도부현(都道府縣) 농업회의

- 농업회의는 행정기관인 시정촌 농업위원회와는 다르고,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도부현 내에 설립되는 농업단체임. 원칙적으로 시정촌 농업위원회의 회장이 회의 원이 되고, 그 회의원과 도도부현 내의 각종 농업단체의 대표, 학식경험자 등의 회의원으로 구성.

□ 농업회의 업무 : 농업위원회 법 제40조에 규정되고 있고, ① 행정청의 자문기관으로서 행정행위를 보완하는 업무(전속적 업무), ② 농업 및 농업인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시하는 업무(비전속적 업무).

### ○ 전속적 업무(농업위원회법 제40조 제1항)

- 농지법등의 법령에 의해 농업회의가 전속적으로 행하는 업무로서, 농지법 등을 기반으로 행정의 행위를 농업회의가 보완.

- 예를 들어 농지법에 농지를 농지이외의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허가할 경우에 지사는 도도부현 농업회의의 의견을 듣는 등의 업무.

- 농지법외에 농업회의의 전속적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는, 농업경기반강화촉진법, 시민농원정비촉진법,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토지개량법 등이 있음.

### ○ 비전속적 업무(제40조 제2항)

- 농업 및 농업인의 대표기관으로서 행하는 업무로, 도도부현 내의 농업 및 농업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공표하거나, 행정청에 건의하거나, 또는 행정청의 자문에 대응하는 업무.

- 그리고 복식부기의 강습회나 농업경영자, 농업법인 등의 조직 활동의 지원 등 농업 경영의 근대화를 지원하는 업무, 농업과 농업인에 관한 문제의 정확한 지식이나 정당한 인식을 농업인이나 농업단체, 타산업 부분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 또한 시정촌의 농업위원 등에 대해 강습이나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나 농업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한 협력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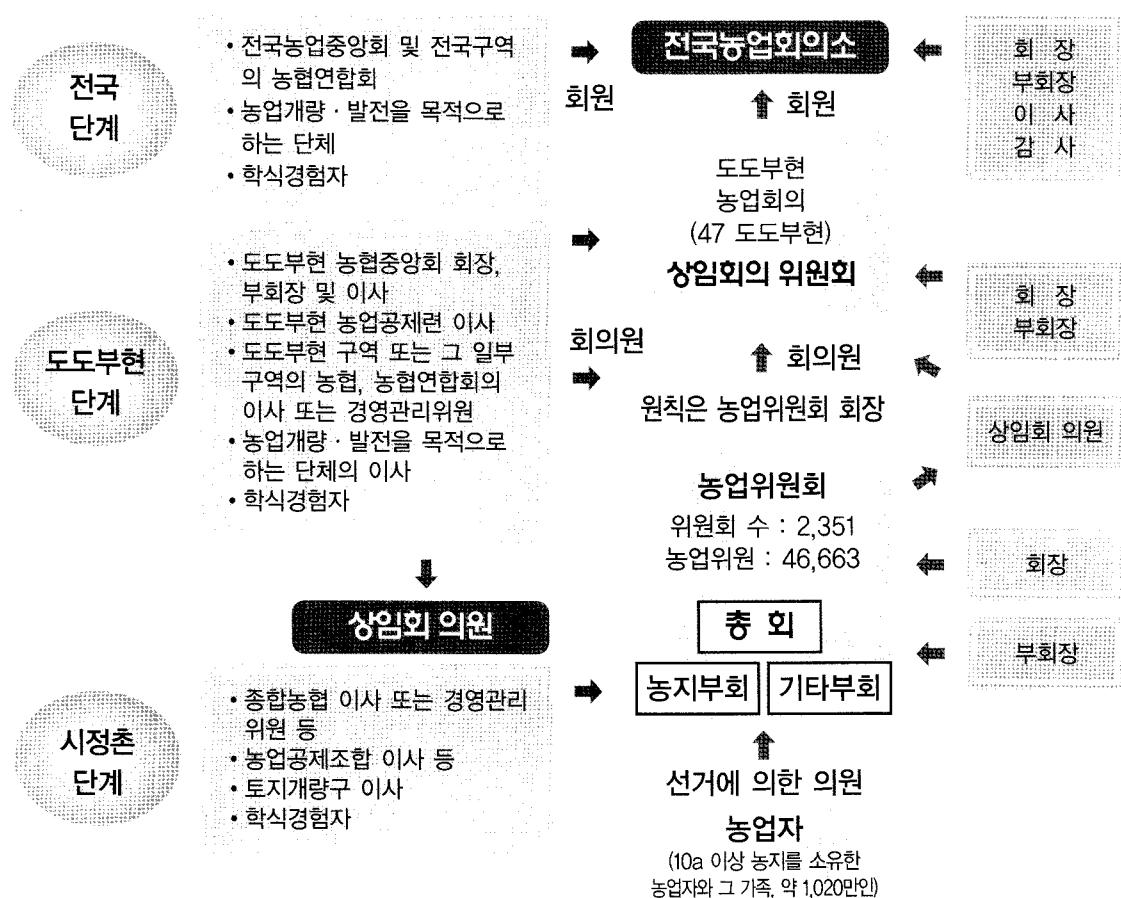
## 라. 전국(全國) 농업회의소

- 전국농업회의소는 도도부현 농업회의와 농협 중앙회, 전국단계의 농협연합회, 농업의 개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학식경험자를 회원으로 하는 농업단체로 구성.
- “농업 및 농민의 입장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농업생산력의 발전 및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농민의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 법으로 1954년 11월 11일에 설립.

- 전국농업회의소의 활동과 성과

- 농촌지역별 실정을 포함한 농지법등을 근거로 공평한 인허가의 법령업무의 수행, 폭넓은 농업인의 의견을 전국적인 규모로 집약하여 얻을 수 있는 조직형태로 되어 있음.
- 전국농업회의소는, 이와 같은 농업위원회 계통조직의 기능을 활용하는 유일한 전국 단체로서 중요한 단계별 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올림으로서 국가의 농정추진 상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일본 농업위원회 구조>



## 2. 전국농업회의소 활동 내용

### 가. 우량농지의 확보와 유효한 활용

#### □ 농지법등의 법령업무의 적정한 집행

- 2009년 12월에 시행된 개정농지법등을 포함하여, 우량농지 확보와 유효활용을 위한 법령업무의 적정한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도도부현 농업회의, 시정촌 농업위원회 대한 연수, 현지순회지도, 정보제공 등을 실시.

#### □ 유휴농지의 발생방지, 해소대책 추진

- 개정농지법을 기본으로 “농지의 이용 상황 조사”와 일상적인 농지감시등을 통해 유휴농지의 발생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대책이나 농지의 무단전용 방지 등의 감시활동을 실시.
- 「더할 나위 없는 농지를 지키고 활용하자」는 홈페이지(<http://www.nca.or.jp/kakogae/>)를 개설하여 유휴농지정보 수집,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해소대책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 농지기본대장의 전산화, 지도의 정보화를 추진

- 농지법등의 법령업무 적정집행의 기본정보가 되는 농지기본대장의 정비와 농지 등 정보종합관리시스템을 개설하여 동 대장의 전산화와 지도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음

#### □ 시정촌 농업위원회 지역 활동의 지원

- 핵심농에 대한 농지이용집적이나 유휴농지의 해소 및 방지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지이용현황도 작성과 활용을 위한 실천방법, 집락좌담회 등의 합의형성을 위한 진행방법 등 농업위원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몽 및 보급 등을 실시.

#### □ 「농지와 핵심농을 지키고 활용하는 운동」 추진

- 2008년부터 농업위원회 계통조직에서는 전국운동으로서, 「신(新) 농지와 핵심농을 지키고 활용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음 이 운동에서는, ① 새로운 농지제도의 적정한 집행, ② 농지 감시에 의한 농지이용 감시활동, ③ 유휴지, 경작포기지의 시정지도, ④ 핵심농의 육성과 농지이용집적활동 등을 전개.

### 나. 매력 있는 농업경영의 확립을 위해

#### □ 핵심농·경영정책추진의 거점으로서

- 인정농업인제도 발족이후, 경영지원을 위한 전국농업경영개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바람직한 농업구조의 확립을 위해 농업분야의 핵심농, 경영정책추진의 거점으로서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핵심농의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시정촌 현장에서의 인정농업인등의 경영개선을 지원, 농업인재 양성이나 민간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중소기업진단사 등)에 의한 상담체제의 정비를 추진. 또한 전국, 도도부현, 시정촌의 각 핵심농 육성종합지원협의회와 연대강화를 추진.

#### □ 인정농업인의 경영개선 지원

-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의욕이 있는 인정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융자, 세제특례, 농용지의 우선적인 이용집적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핵심농협의회와 연대하여 이러한 제도를 홍보하고, 인정농업인의 경영개선목표의 기초데이터인 농업경영개선계획의 달성상황 등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 그리고 경영개선지도를 위한 교육 및 매뉴얼을 작성.

#### □ 부기기장, 청색신고 추진

- 복식부기기장의 지도를 통하여 경영계수 관리에 의한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경영자

### 의 육성을 지원.

- 청색신고의 보급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지도와 부기기장의 기장결과가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 인정농업인의 교류, 네트워크조성
  - 2009년 현재, 인정농업인은 전국에 약 24만6천 경영체 정도임. 이러한 한사람, 한 사람의 인정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정촌이나 도도부현에서는 인정농업인의 조직을 구성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인정농업인의 교류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이후 매년 전국의 핵심농서미트를 개최하고 있음.

### 다. 농업법인화 추진과

#### 농업경영인 운동의 지원

- 농업경영의 법인화 추진과 조직 활동의 지원
  - 1955년 이후 지속적으로 농업경영의 법인화와 농업법인의 자주적인 조직화와 조직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1962년에 제도화된 농업생산법인제도는 농업경영의 근대화의 요청을 받아 농업위원회 계통조직에 의한 법제화의 운동에 의해 제정된 것임. 그 후에도 농업경영학립의 관점에서 농업 생산법인제도 등의 개선이나 (사)일본농업 법인협회와 연대하여 법인화 추진과 조직화를 추진하고 있음.
- 농업경영자운동의 지원
  - 농업법인 조직화의 토대를 이룬 것이 농업 인들이 자주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인 경영 자조직에 의한 농업경영자운동임. 농업위원회계통조직은 각종 연수회, 강습회 등을 통하여 지원을 하고 있음.
  - 전국경영자협회나 전국양계경영자협회, 전국수도작경영자협회 등 부문별 전국조

### 직의 사무국으로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외국인 연수생 지원 사업
  - 농업에 대한 부적절한 외국인 연수의 시정이나 농업특유의 과제를 해결하고 농업분야에 외국인연수제도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적정한 연수생을 위한 질서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연수기관, 농가의 수요파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회 등을 개최하고 있음.

### 라. 활력 있는 가족경영 육성과 노후대책

- 농업인연금제도의 추진
  - 농업인연금제도는 「농민에게도 샐러리맨과 동등한 연금을」이라는 목표로 농업위원회계통조직으로서 350만명의 서명을 받는 등, 농업인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1970년에 농업인의 연금으로 제정되었음.
  - 2002년 1월부터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의 이념을 근거로 한 정책연금으로, JA나 농촌관련 조직과 연대하여 농촌현장의 흥보와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리고 농업인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자주적인 조직인 「노우넨크럽」「のうねん俱樂部」의 사무국으로서 농업인연금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 가족경영협정 추진
  - 젊은이나 여성에 의해 농업을 매력이 있는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 가족경영이어도 개인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경영과 가계의 분리 등 근대적인 경영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
  - 1955년부터 “가족협정농업”을 추진하였고, 1993년부터 새롭게 “가족경영협정”을 제안하여, 여성이나 젊은이도 경영에 참가하고 가족 모두가 경영방침에 대해 협의를 하는 파트너십 경영을 추진하고 있음.

- 새로운 농업인연금제도에서도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여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배우자, 후계자는 정책지원(특별부가연금의 보험료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마. 신규취농, 인재대책

- 신규취농을 위한 정보제공과 상담활동
  - 일상적인 면담이나 전화, 메일등에 의한 상담활동, 신규취농상담회 등 취농상담활동, 구인정보의 수집, 제공, 관리, 신규취농네비게이트시스템(홈페이지를 활용한 다각적인 정보제공), 상담과 정보제공업무의 기초자료가 되는 신규취농지원정보 등의 각종조사, 신규취농사례집, 취농안내책자, 등을 발간하는 등, 연수농장의 네트워크, 취농서포트연락협의회의 사무국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본격적으로 취농하기 전에 체험이나 연수지원활동
    - 학생과 사회인을 대상으로 전국 150개 농업법인과 제휴한 농장현장의 “농업 인턴쉽”과 취농준비학교인 일본농업실천학원과 연대하여 “학교”에서 이론학습과 실습을 병행하는 농업체험과 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 인턴쉽은 연수 가능한 농업법인(일본농업법인협회회원으로 연수와 고용이 가능한 경영체) 등과 체험희망자를 체험희망지역, 작목, 기간에 따라서 희망법인에 보내고, 학생은 체험을 통하여 취농이나 취업의 기회를 갖는다. 또는 원하지 않는 고용이 되지 않기 위해 채용예정자의 사전체험을 실시한다. 체험기간은 1~6주간으로, 원칙은 2주간을 실시함.
    - 농업체험은 수도작이나 채소, 시설재배, 유기재배 등 작목별 1주일, 1개월, 3개월

- 연수코스가 개설되어 있음.
- 농업법인 등의 고용확보와 실천연수의 지원 활동
  - 젊은이의 취농을 촉진하여 장래 농업의 핵심으로 확보, 육성하기 위해 농업법인 등의 경영체가 농업체험이 적은 자를 고용하여, 기술이나 경영노하우를 몸에 익히도록 하기 위해 실천적인 OJT연수에 대해 지원하는 활동이다. 농업법인 등의 경영자, 연수책임자들에게 지도자양성연수, 연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도도부현 농업회의가 지방기관이 되어 모집, 현지 확인, 연수생에 대한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
  - 후계자가 없는 농업경영을 제3자에게 계승하는 활동
    - 후계자가 없는 농업경영(농기계, 시설, 재배기술, 경영관리능력, 판로, 지역에서의 역할 등 경영자산)을 사멸시키지 않고, 제3자인 신규취농인이나 독립을 목표로 하는 농업법인 등의 종사원, 농업연수생에게 계승하는 것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 지원은, ① 경영 이양자의 연수에 대한 지원, ② 이양자, 경영자 쌍방에게 안심하고 확실한 계승을 위해 경영계승합의서 체결, ③ 행정이나 농업위원회, JA, 보급기관 등이 팀이 되어 코디네이터 하는 등의 지원을 함.
  - 취업환경의 정비를 지원하는 고용개선활동
    - 농업법인 등의 고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은 노동보험, 사회보험의 가입비율이 낮고, 타 산업에 비해 취업환경의 정비가 늦어 종사자의 정착에도 영향을 미침.

- 때문에 직장과 일로서 농업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법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추진하거나 복리후생을 충실히 하는 등 직장환경의 정비를 지원하는 농업고용개선추진사업과 각종 연수회나 순회상담회, 농업법인에서의 개별상당, 지도, 경영자의 의식개혁을 위한 계몽활동 등을 추진.
- 농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본농업기술검정
  - 일본농업기술검정협회(농업교육, 농업, 행정의 14개 단체로 구성)의 사무국으로서, 농업을 배우는 학생이나 신규취농자 등의 농업지식, 기술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농업기술검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시험내용은, 학과 1~3급과 실기 1~2급으로 농업학교생, 농업대학교생, 대학농학부의 학생, 농업법인 등에 신규로 취농한 사람이나 일반농업장, 농업관계의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수험을 받고 있음.

## 바. 농업정책

- 농림수산대신에게 농정제언
  - 19회에 이르는 제언은, 칙실하게 정부의 농업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 식료·농업·농촌기본법 등 농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법률이나 제도가 이러한 제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자문활동은, 시정총 농업위원회, 도도부현 농업회의가 실시하는 의견의 공표나 행정청에 대한 건의 등의 농정활동을 기반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의욕 있는 농업인등의 농업현장 소리를 농정으로
  - 시정총 농업위원회에서는, 농지확보나 인정농업지등 핵심농에게 농지이용집적, 농업을 담당하는 인재확보 등 식료·농업·

- 농촌기본계획의 구체화를 위해 농업인과의 의견교환회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의견교환회 등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과제 등을 축적하고 각종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농업제도의 개정이나 신설, 예산이나 세제문제 등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언이나 의견공표 등의 농정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의 사고를 세계를 향해 주장
  - 세계적인 농업단체인 국제농업생산자연맹(IFAP, 1946년 창설, 파리)의 일원으로서 오랜 동안 활동하고 있다.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인가된 NGO단체로서, WTO농업교섭의 정부 간 교섭의 지원 등을 통하여 일본의 생각을 국제사회에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식료공급의 안정 확보 등 21세기의 지속가능한 식료, 농업정책의 확립에 전세계의 농업단체와 하나가 되어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해외 농업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해외 농업 사정이나 농정제도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여 일상적인 농정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음.
- 기타 정보전달 활동
  - 전국농업신문 발간, 농정조사시보, 전국농업도서 발간, 각종 품평회 등

<편집자 주 : 본 원고는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임>